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 경력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 요건 제한〉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81호)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97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13.
3. 회부연월일 : 2024. 12. 16.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1.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0.
3. 회부연월일 : 2024.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도 역시 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을 면한 직후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 역시 현역을 면한 이후여야만 임명될 수 있음.

1961년 이래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성만이 임명되었음. 대체로 군인이 현역을 면한 직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주도하는 군내 사조직과 특정 파벌이 형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친위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군내 지휘·감독 체계에 어긋나는 명령과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됨. 이에, 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현, 군정권과 군령권의 확실한 분리를 위해 예비역 군인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고자 함.

한편, 미국은 법(미국법전 제10편 제113조)을 통해 대령 이하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 준장 이상의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군인 출신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요건으로,

김태년의원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미애의원안은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김태년의원안 및 추미애 의원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행	김태년의원안	추미애의원안
제33조(국방부) ① (생략)	제33조(국방부) ① (현행과 같음)	제33조(국방부)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②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u>	<u>②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1)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u>
<u>② ~ ⑥</u> (생략)	<u>③ ~ ⑦</u>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u>③ ~ ⑦</u>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1)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 3. (생략)

② ~ ④ (생략)

「대한민국헌법」 제5조²⁾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의무를, 제87조³⁾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각각 명시하고 있고, 제94조제1항은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들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현역을 면한 직후에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1961년 이래 예비역 장성만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고 있는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들은 군인 출신자로서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인이 군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문민화 체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들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의 목적 및 체계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임명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2)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 (생략)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3)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③ (생략)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4) 문민통제에 대한 법적·사전적 정의는 없음, 다만, 강학상으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개념으로 군사 및 국방정책에 관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정치지도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의됨(「미국 의회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개념 발전과 적용을 중심으로(2016년도 국회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6.12.).

현행법 제1조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이에 제4장(행정각부)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부(제26조)와 그 소관사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제27조부터 제45조까지)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국민을 위하여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기본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군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조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독일·영국·일본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임명 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주요국의 국방장관 임명 요건]

국가	근거 규정	국방부장관 임명 요건 또는 군인 출신으로 임명된 사례
미국	「국방재조직법」 10 U.S. Code §113 - Secretary of Defense	- 민간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임명 - 군인 출신의 경우, 정규군 장교 O-7(준장) 미만의 계급은 전역 후 7년이 경과한 뒤 임명이 가능하고, O-7 이상의 계급은 전역후 10년이 경과한 뒤 임명이 가능
프랑스	해당 없음	- 직업 군인 경력자로서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사례 (1건) 있음

국가	근거 규정	국방부장관 임명 요건 또는 군인 출신으로 임명된 사례
독일	해당 없음	- 직업 군인 경력자로서 1990년 이후 국방부장관 에 임명된 사례 없음
영국	해당 없음	- 직업 군인 경력자로서 1990년 이후 국방부장관 에 임명된 사례(2건) 있음
일본	해당 없음	- 일반적으로 군사적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정치인 중에서 임명된 사례가 많음

주) 국방재조직법(Goldwater-Nichols Department of Defense Reorganization Act of 1986)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회답을 토대로 재정리

셋째, 개정안들을 수용할 경우, 군 전역 후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기간의 적절성, 제한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해 보임.

먼저, 군 전역 후 국방부장관 보임 제한 기간과 관련해서는 김태년
의원안은 “5년”, 추미애의원안은 “7년”의 기간이 지나야 할 것을 각각
요구하고 있는바,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또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1조⁵⁾에 따라 국방부 직위 중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군인도 보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 해당 근무 기간을 국방부장관 보임 제한 기간에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예비역 제한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김태년의원안은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추미애의원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
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안은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교인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방부장관 보임 제한대상이 되는 군인 계급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군인 경력자에 대한 국방부장관 임명요건의 제한을 통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현행법 체계상 측면,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